

뉴질랜드 저작권법 개정안 중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요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책임문제가 핫이슈가 되고 있다. 2008년 11월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인터넷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다음이 불법으로 음악이 유통되는 것을 막지 않아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¹⁾

이들 포털 사이트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려서 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고 있는 듯 하다.

이번 주 동향은 뉴질랜드 저작권법 개정 내용 중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개정 법률을 정리해보았다. 이번 개정 중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ISP들에게 모니터링 의무 및 반복적 침해자(repeat infringer)에 대한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09년 3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Internet service provider liability)

92A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반복적 침해자에 대한 계정을 정지시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1)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적절한 경우 당해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반복적 침해자에 대한 계정을 정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2) 제(1)항의 반복적 침해자(repeat infringer)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92B 사용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1) 본조는 만약 A가 하나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여 저작물의 저작권을 반복

1)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1/04/2008110400059.html>

- 적으로 침해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적용된다.
- (2) A가 단지 당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만으로
- (a)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 (b)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A의 저작권침해를 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c) 제(3)항에 따라 어떠한 민사상의 구제 또는 형사상의 처벌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 (3) 본조의 어떠한 내용도 A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자의 금지적 구제(injunctive relief)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 (4) 제(1)항 및 제(2)항의 인터넷 서비스(Internet service)란 제2조제(1)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의에서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92C 침해 게시물을 저장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1) 본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 (a)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한 게시물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저장하고;
 - (b) 그 게시물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수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
- (2)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게시물을 저장하더라도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a)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 (i) 게시물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 (ii) 저작권침해 게시물을 인지한 즉시 당해 게시물에 대한 접근차단 또는 삭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 (b)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지시 또는 대신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게시물을 제공한 경우
- (3) 법원은 제(2)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물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관련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 (4) 게시물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그렇게 믿을만한 이유가 있어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접근차단 또는 삭제 조치를 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게시물이 접근차단 또는 삭제 조치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5) 본조의 어떠한 내용도 이용자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자의 금지적 구제(injunctive relief)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92D 침해 통지의 요건

제92C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반드시

- (a) 동법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고,
- (b)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92E 침해물의 캐싱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1)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물을 캐싱하는 것만으로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 (a) 게시물을 수정하지 않고;
- (b) 게시물의 접근에 대해 저작권자가 부과한 어떠한 조건에도 부합하며;
- (c) 게시물의 사용함에 있어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기술의 합법적인 이용을 방해하지 않고;
- (d) 합리적인 업계의 관행에 따라 게시물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경우

(2)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경우를 인식한 뒤 즉시 게시물에 대한 접근차단 또는 삭제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게시물에 대한 캐싱도 저작권침해가 된다.

- (a) 게시물이 원본출처에서 삭제되었거나,
- (b) 원본출처에서 게시물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었거나,
- (c) 법원이 게시물을 원출처(original source)에서 삭제 또는 차단을 명령하였을 경우

(3) 본조의 어떠한 내용도 이용자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자의 금지적 구제(injunctive relief)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4) 본조에서

“캐시(cache)”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 (a) 자동화된 공정에 의하여 처리되고;
- (b) 일시적이고;
- (c) 서비스 이용자들의 요청에 의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오로지 게시물의 전송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

“원출처”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캐시되는 게시물을 복제하였던 출처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 o http://www.parliament.nz/en-NZ/PB/Legislation/Bills/b/2/a/00DBHOH_BILL7735_1-Copyright-New-Technologies-Amendment-Bill.htm
- o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94/0143/latest/DLM345634.html?search=ts_act_copyright&sr=1
- o <http://www.legislation.govt.nz/regulation/public/2008/0411/latest/DLM1689424.html>